2026년 2학기 7기수 (2026년 11월 11일 개강)

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

1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

① 학사일정

구분	개강	종강	실습인정기간	성적보고	비고
일자	2026.11.11.(수)	2027.02.23.(화)	2026.11.16.(월) ~2027.01.31.(일)	2027.03.16.(화) 예정	

② 실습시간 구분

구분		구법(종전법)	신법(개정법)
구분 기준		19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 또는 수강한 학습자	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
		- 구법 해당 과목 및 타 대학(교육원) 선이수증명서 제출 필수 - 구법 서류 미제출 시 160시간 진행	- 타 대학(교육원) 선이수 시 해당 대학(교육원)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
이수조건	1 실습시간	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(실습보고서,평가서,확인서 제출)	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(실습보고서,평가서,확인서 제출)
	2 학습진도	- 실시간 오리엔테이션 1회 참석 ※ 지각 및 결석 시 이수 불가	- 오프라인 출석 수업 3회 참석 ※ 1회 이상 지각 및 결석 시 이수 불가
		- 온라인 학습 2~14주차 강의 수강 필수	
	3 공통	※ 총점 60점 이상 및 출석률 100%	
유의사항		※ 이수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실습과목 이수 불가	

③ 세미나 수업일정

구분	구분		수업일자	수업방식	이수시간	비고
신법 (개정법)	1차	오리엔테이션	2026.11.14.(토)	오프라인 대면수업	각 회차 당 2시간 (총 6시간)	
	2차	실습 특강	2027.02.13.(토)			
	3차	최종보고회	2027.02.20.(토)			
구법 (종전법)	1차	오리엔테이션	2026.11.14.(토)	실시간 온라인 ZOOM 수업 참여	1회 (2시간)	
공통 사항	▶ 일정 변경 불가 / 추가 개설 및 보강 없으므로 지각 및 결석 불가 ▶ 분반 및 수업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및 문자 안내 예정 / 시간 지정 불가 - 실습지도에 따른 반 배정으로 변경 불가함 ▶ 분반 및 수업 시간은 1차 수업에 배정된 시간과 동일하며 변경 불가					

2 실습 신청조건 및 진행 절차

① 실습 신청 조건

- 지역 : 전국 (단, 제주 및 도서산간 불가)
- 사회복지 관련 과목 필수 4과목, 선택 2과목 이상 이수자만 신청 가능
- 타 교육원 이수 시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

구분	교과목 명	선수과목
필수 과목	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법제와실천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	4개 과목 이상 (6개 과목 권장) / 12학점 이상
선택 과목	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	2개 과목 이상 /6학점 이상

② 실습 진행 절차

NO	진행기간	진행사항	내용	비고
1	~2026. 10.27.(화) 까지	실습 기관 확정 및 신청서 제출	▸ 실습 진행 기관 선정 확정 후 온라인으로 실습신청서 접수 필수 * 실습 기관 협의 없이 제출 시 실습 불가 * 각 지역별 선착순 모집 진행 / 조기마감 유의	
			▸ 온라인 신청 접수 - 경로 : 나의강의실 - 현장실습신청서 메뉴 - 해당 메뉴 외 접수 불가	
		실습 가능 여부 검토	▸ 학습자가 제출한 실습신청서 검토 후 가능 여부 확인 - 수정사항 개별적으로 유선/문자 안내 진행	
2	~ 2026. 11.10.(화) 까지	실습 과목 수강 신청	▸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▸ 실습가능지역 : 전국 (단, 제주 및 도서산간 제외)	
3	2026. 11.13.(금)	실습 의뢰 공문 발송	▸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공문 발송 [교육원→실습기관] ▸ 학습자 실습 개시일 전까지 공문 발송 진행	

<table>
<tr><th>NO</th><th>진행기간</th><th>진행사항</th><th colspan="2">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4</td><td rowspan="2">2026.
11.14.(토)</td><td rowspan="2">오리엔테이션
(1차 세미나)</td><td>신법</td><td>▸ 출석수업 (미참여 시 과락)
▸시간 / 장소 추후 별도 공지</td><td rowspan="5">미참여 시
과락</td></tr>
<tr><td>구법</td><td>▸ 실시간 온라인 ZOOM수업
▸시간 / 방법 추후 별도 공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5</td><td rowspan="4">2026.
11.11.(수)
~
2027.
02.23.(화)</td><td rowspan="4">【학습자】
실습진행 /
온라인강의
수강</td><td>온라인
강의
수강</td><td>▸온라인 강의 수강 : 2~14주차
(출석률 100%미만 시 과락)
- 매주 오픈되는 강의 필수 수강
※ 실습진행시간 동안 강의 수강 시 인정 불가</td></tr>
<tr><td>실습
진행</td><td>▸실습 인정 기간
: 2026.11.16.(월)~2027.01.31.(일)

★ 실습 진행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
※ 기간 외 실습은 불가
○ 최소 160(개정법)/120(구법)시간 실습 진행
▸1일 최소 4시간 ~ 최대 8시간 인정
(휴게/식사시간 제외)
※ 1일 4시간 미만, 8시간 초과 시 실습시간 불인정
▸주 40시간 초과 불가(월~일 이내)
▸주말 및 야간 실습도 가능 (단, 실습지도자 상주시)
▸실습기간 내 지도교수의 실습지도 점검 진행</td></tr>
<tr><td>온라인
과제제출</td><td>▸ [실습기관분석보고서] 제출
: 2027.01.07.(목) ~ 2027.02.02.(화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실습
과제제출</td><td>▸ 현장실습 일지 등
보고서 제본 및 평가서류 제출
: ~ 2027.02.04.(목) 등기 도착분</td><td>미제출 시
과락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7</td><td>2027.
02.13.(토)</td><td>실습 특강
(2차 세미나)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▸ 신법(개정법)만 해당
▸ 출석 수업 (미 참여시 과락)
▸ 1차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동일 적용
- 분반/시간 변경 불가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2027.
02.20.(토)</td><td>최종보고회
(3차 세미나)</td></tr>
</table>

3 실습기관 선정방법 및 요건

① 실습기관 선정

※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
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이 공고됨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

○ 실습기관 확인 방법

▸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접속 https://www.welfare.net/prm/

· 메인페이지 내 [실습기관검색] / [현장실습기관찾기] 클릭 후 실습기관 검색 가능

· 메인페이지 내 [실습생모집게시판] 또는 상단 [현장실습기관찾기] 클릭> 좌측 [실습생모집 게시판] 클릭 후 모집중인 기관 확인 가능

○ 선정상태가 "정상"이어야 하며, 실습기관 유효기간 내 실습진행이 가능한지 확인
- 정지, 취소 상태거나 유효기간이 촉박한 경우 다른 기관 권장

○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

② 실습지도자 조건

○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등록된 실습지도자 중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

○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: **실습 동시 지도인원 5인 이내**

▸상기 지도 인원 위반 시 실습 인정 불가 및 실습 취소

③ 실습진행시간

○ **1일** 실습인정시간은 **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** 이하로 제한함

○ **1주 40시간 초과 불가 (월요일~일요일 기준)**

○ 「근로기준법」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

- 휴게시간 : 8시간 이상 실습 시 1시간 휴게시간 필수, 4시간 이상~8시간 미만 시 권장

* **휴게시간의 경우 실습 시간 중간에 있어야 하며, 실습시작 또는 실습종료시간에 진행 불가**
(예: 9:00~14:00 실습 시 9:00~10:00 또는 13:00~14:00 휴게시간 인정 불가)

★ 실습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 및 휴게시간은 제외
(단,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
지도계획서 및 실습일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실습시간으로 인정함)

④ 실습 진행 시 유의 사항

○ 납부한 수강료와 별개로 현장실습비는 별도 발생되는 항목으로 학습자 개별부담

○ 동일 직장 내에서의 실습 및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

○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,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

4 실습 수강 시 유의사항 ★

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업

○ 온라인 강의 100% 출석 (1강 이상 미출석 시 출석 과락)
- 온라인강의 2주차~14주차 수강

※ 학습자 부주의로 인한 출석률 미달은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수강기간 마감일 전에 출석률 100%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세미나 수업 미참석 시 과목 수강 불가
▶ 160시간(신법/개정법) : 3회 오프라인 출석 수업 모두 참여 (공결 처리 및 보강 불가)
▶ 120시간(구법/종전법) : 1회 실시간 온라인 줌 수업 참여 (공결 처리 및 보강 불가)
▷ 세미나 수업은 공결 처리 및 보강 진행 불가 항목으로 해당 진행일에 참여 필수

② 실습진행 시

○ 실습지도교수 실습지도
- 학습자의 실습기간 중 기관에 불시 방문 예정이며, 방문일에 실습생 또는 실습지도자 부재일 경우 실습 이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실습생 및 실습지도자가 외부 행사 등으로 부재 시, 실습지도교수에게 반드시 사전 공유 필수
- 실습생의 개인 사유 또는 기관의 사유로 실습 일정 및 실습지도자가 변경될 경우, 실습지도교수 및 교육원에 사전 공유 필수

▶ 상기사항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은 교육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.

○ 실습일지 작성
- 실습일지 양식의 경우 본 교육원 양식으로 진행 / 다른 양식의 경우 인정 불가
  (타기관 양식은 불가하며, 실습기관 양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교육원 문의 후 승인 필요)
- 실습일지/실습확인서/실습평가서 등 모든 제출서류 내 서명 또는 도장은 한 가지로 통일
  (예: 학습자 서명 시 모든 서류 내 학습자 서명 란은 동일한 서명 날인,
  지도자 도장 시 모든 서류 내 지도자 서명 란은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되어야 함)
  > 모든 서류 내 서명란은 100% 실제 서명 또는 도장 날인만 가능 (이미지첨부/복사X)
- **휴게시간의 경우 실습 시간 중간에 있어야 하며, 실습시작 또는 실습종료시간에 진행 불가**
  (예: 9:00~14:00 실습 시 9:00~10:00 또는 13:00~14:00 휴게시간 진행 불가)
- 실습시간 별 동일한 실습 진행 시 실습시간 병합 가능
  (예: 13:00~14:00/14:00~15:30 학습지도 및 요일별 특화프로그램 지도지원
  ☞ 13:00~15:30 학습지도 및 요일별 특화프로그램 지도지원)
- 실습 진행 시 실습일지의 내용이 동일/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실습 진행 내용에 따른 세분화하여 작성 권장
  (예: 13:00~18:00 / OOO 교육이수
  ☞ 해당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,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작성 필요)